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5. 3.

기 획 재 정 부

목 차

제1편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2
1. 법적근거	2
2. 운영절차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4
1. '24년 조세지출 현황	4
2. '24년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7
Ⅲ.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0
Ⅳ. 조세지출성과관리 시행계획	13
제2편 202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7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8
1. 의 의	18
2. 조세지출 건의서	18
3. 조세지출 평가서	19
Ⅱ. 2025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20

제1편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I.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조세지출 기본계획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
 - **(조세지출 성과제고, 조특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규정 (참고1)
 - **(국세감면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 규정
-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 **(기본계획 수립·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31.까지 각 부처에 통보
- **(건의서·평가서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매년 4.30.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건의서)** 조세감면의 신설·확대가 필요한 경우, 정책목적·정책 효과·연도별 세수효과·세출예산 중복여부 및 세수보완방안을 포함한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
 - **(평가서)** 일몰도래 조세특례 등*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분석,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참고1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 ①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 평가
 - 각 부처는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② **(의무심층평가)**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 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③ **(임의심층평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

< 임의심층평가 대상 >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항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부처자율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용 실적

1 '24년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25년 조세지출예산서('24.8월)에 따른 '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 전망

○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1.6조원, 2.4%*)하나, 국세수입총액 감소(△6.0조원, 전년대비)로 국세감면율 상승 예상**

* 국세감면액 증가율(%): ('19)12.8 ('20)6.8 ('21)7.7 ('22)11.4 ('23)9.8 (5년 평균)7.6

** '24년 국세감면액 최종 확정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25.8월)」에서 발표

(단위: 조원, %)

구 분	'23년(실적)	'24년(전망)	'25년(전망)
■ 국세감면액(A)	69.8	71.4	78.0
■ 국세수입총액(B)*	370.4	364.4	412.2
■ 국세감면율[A/(A+B)]	15.8	16.3	15.9
■ 국세감면한도**	14.3	14.6	15.6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88)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관리유형별 현황) '24년 감면액 중 조세지출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 비중은 16.8조원으로 약 23.5% 수준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을 제외한 국세감면액은 54.4조원, 국세감면율은 12.9% 수준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A)	69.8	100.0	71.4	100.0	78.0	100.0
- 구조적 지출	15.3	21.9	16.8	23.5	17.9	22.9
- 잠재적 관리대상	21.1	30.2	21.7	30.4	22.9	29.3
- 적극적 관리대상	33.0	47.4	32.7	45.7	37.0	47.4
- 경과규정	0.4	0.5	0.3	0.4	0.3	0.3

※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없는 항목

잠재적 관리대상: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

참고2**관리유형별 조세지출 항목****< 구조적 지출 항목 명세 >**

[8개 항목]

조 항	내 용	성 격
소득세법 §12 3(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조세체계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
소득세법 §51①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2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3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9의2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다자녀)	
소득세법 §59의4①, §52①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명세 >

[40개 항목]

조 항	내 용
부가가치세법 §42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소득세법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②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③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④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법인세법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관세법 §91 4,5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18①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31,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법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 항	내 용
조특법 §39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4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5	기부장려금
조특법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특법 §100의2~13	근로장려금
조특법 §100의27~31	자녀장려금
조특법 §105①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5,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5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6①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117①7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법 §121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운영결과)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에 대해 사전·사후관리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2건)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1건은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신중검토 의견인 1건은 미반영
 -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심층평가, 21건) 일몰종료 등에 대한 의무 심층평가 7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임의 심층평가 14건
 - 의무심층평가 결과 재설계 4건, 일몰종료 2건, 유지 1건
 - 임의심층평가 결과 재설계 6건, 일몰종료 1건, 유지 7건
 - (기타 조세지출 관리) 부처 자율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를 달성한 조세지출 4건 일몰종료
- (집행관리)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사전관리)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타 면제된 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제출
 - 예타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6건*에 대하여 해당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국회 제출('24.11월)
 - * ①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②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③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④결혼세액공제 신설, ⑤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⑥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사후관리) 연구기관과 성과평가 관련 피드백 회의 실시('24.11월) 및 의견 반영하여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합리화
 - 이종과세의 조정 등 조세지출의 목적이 없는 사항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5.2월)

Ⅲ.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 (경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

- 우리 경제는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리스크 확대
-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여전히 소비·건설 등 내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어려움 지속
-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증가세 둔화, 생산성 향상 지연 등이 장기간 지속되며 잠재성장률 둔화

* 잠재성장률(%), 연평균, 한국은행: ('16~'20)2.6 → ('21~'23)2.1 → ('24~'26)2.0

2. (세입)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나, 불확실성 상존

- '25년 국세수입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 존재
 -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속도 둔화 우려
-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조세지출

정책
목표

- ①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 ②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 ③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

조
세
지
출

운
영
방
향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 성과평가의 적극적 운용
-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역할분담 강화
-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

1.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1]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기업들의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 지원

2]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 추진
-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3]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금년부터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신설), 자녀세액공제(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차질없이 추진

2.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1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 및 부처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 추진
 - 정책목표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2 정책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과 조세지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과의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 방지

3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실질에 맞도록 법을 적용하여 조세지원 남용 방지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점검

3.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

1 성과평가의 적극적 운용

- '25년 일몰 도래 제도 등 총 27개의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를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관리 가능한 조세지출 위주로 중점 관리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이중과세 조정, 실비변상, 과세형평 제고 등이 목적인 제도

2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를 통해 역할분담 강화

-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하여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확립

- 통합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 마련

* 영상콘텐츠 산업진흥 및 고용 장려 사업군 대상 통합심층평가 진행 중(~'25.5월)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재정지출 규모 현황을 활용하여 관리

3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

- 조세지출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평가서 작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담당자 대상 평가서 작성방법 교육 실시

-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을 통해 활용도 제고

* 예) 정책 우선순위 구체화, 심층평가와 연계 등 건의서 보완

IV.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시급성 등 평가대상 선정기준 (운용지침 §14)에 따라 조세지출 1건*에 대해 타당성 평가

*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 **(심층평가)** '25년 일몰도래 제도 등 총 27건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의무심층평가)** '25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 의무심층평가 실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4건*에 대해 임의심층평가 실시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성과평가 제도 효율적 운영 및 환류

- 예타·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고, 유사·연관된 조세특례는 일괄평가하여 심층평가 효율성 제고
- 예타·심층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 부처 제출 건의서 및 평가서 관리 강화

- **(건의서)** 건의서 작성 지침에 맞게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통계자료, 세수보완방안 등 충실한 작성 유도
 -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 세수 효과만을 작성하는 등 직접적 재정절감 방안이 누락된 경우 추가 보완 요청
- **(평가서)** 평가서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 고려

'2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1건)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추가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심 층 평 가 (27건)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③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지분 취득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④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
	* (임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기업규모·소재지·채용 대상에 따라 3년간 차등 공제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1년)
	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이전지역에 따라 7~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⑦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이전지역에 따라 7~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⑧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 과세
	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특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1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⑪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연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⑫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조합원, 회원 등의 출자금(납입한도: 2천만원)·예탁금 (납입한도: 3천만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⑭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인하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⑮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⑯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민이 구입하는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⑰*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⑱*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내·마을·농어촌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⑲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 면제
⑳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㉑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공제
㉒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㉓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중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임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및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의 경우 추가공제
(임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1호 30%, 2호 이상 20% 소득세·법인세 감면

※ 특례 내용이 유사한 제도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

'2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2월 ~ 5월	심층평가 실시 (2월~)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2월~)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26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6월 ~ 7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26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9월 ~ 12월	'26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0월)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 선정에 따른 '26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26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제2편

2025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I.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 의

-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정책결정에 활용
 - (조세지출 건의서)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 (조세지출 평가서) 각 부처의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 실시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및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 작성·제출
 -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 포함
 -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제출(8월 중)
- 새로운 조세감면 요청 시 감면액 보충을 위해 기존 감면액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함께 제출은 법적의무(국가재정법 §88)

-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 대상
 -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 세수증대 효과만 작성하는 경우 세수 보완방안 추가 작성 요청

※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4.30일)
 -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일몰기한이 없는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 여부(범위확대 포함) 등을 자율 평가
 -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
 - * '25년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137개 항목
 - ☞ 다수 부처가 관련된 조세지출은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
 - ※ 소관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 ☞ 부처 평가서 작성 시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
 - * 기존 평가항목 외에 제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 평가서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 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 고려

Ⅱ. 2025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① '25년말 일몰도래 105개* 항목(중복 제외시 72개)

* 동일 항목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 계산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조특	7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조특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	85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	18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교육부	조특	74	①	1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학교법인)
	조특	74	①	1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산학협력단)
	조특	74	①	1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조특	74	①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국립대학병원등)
	조특	74	①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국립대학병원(치과)등)
	조특	74	①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장학재단)
	조특	74	①	9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특	106	①	80B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조특	104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 교통부	조특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87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87	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98의9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	106	①	402 40B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고자동차)
	조특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금융 위원회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신탁)
	조특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신탁)
	조특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91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조특	117	①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시장조성자)
	조특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기획 재정부	조특	2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농공단지)
	조특	69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조특	72	①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협)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농협)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105	①	5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축산업용)
	조특	106	②	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농민)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국가식품클러스터)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25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74	①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도서관)
	조특	74	①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박물관)
	조특	74	①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미술관)
	조특	74	①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문화예술단체등)
	조특	74	①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조특	107의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조특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조특	136	③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전통시장 지출분 손금산입 특례 (문화비)
보건 복지부	조특	74	①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사회복지법인)
	조특	74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조특	107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첨단의료복합단지)
산림청	조특	71	①	1	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산림지)
	조특	72	①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산림조합)
	조특	105	①	5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업용)
	조특	106	①	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3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28	①	3		통합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	6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63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63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85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9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4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인사 혁신처	조특	74	①	9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공무원연금공단)
중소 벤처 기업부	조특	7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3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	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1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조특	72	①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중소기업협동조합)
	조특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17	①	1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36	⑥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전통시장 지출분 손금산입 특례
환경부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
	조특	106	①	5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	①	9의2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양 수산부	조특	69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	7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어자녀)
	조특	72	①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수협)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수협)
	조특	104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05	①	6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조특	106	①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1	①	2		
	조특	106	②	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어민)
	조특	106의2	①	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행정 안전부	조특	111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	72	①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새마을금고)
	조특	88의5 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새마을금고)

2 일몰 없는 32개 항목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소득	12		3	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세	90	①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국방부	조특	114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국세청	조특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토 교통부	조특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특	104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 위원회	조특	106	①	1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26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16	①	9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51의4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52 59의4	① ①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기획 재정부	부가	26	①	10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	93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	119의3				
농림축산 식품부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가	42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소득	12		2	가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	12		2	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상증	18	①	2		영농상속공제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115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 주세 등 면제
보건 복지부	소득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	59의4	④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중소벤처 기업부	조특	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31,32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	47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조특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	99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상증	18의2				가업상속공제